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 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공포(2007.

1. 2 조례 제641호)됨에 따라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수관리팀의 소속부서가 교통지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변경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항 내용 중 교통지도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변경되었으나, 조직개편 이후 해당부서에서 문제점이 대두되어, 2007. 2. 15 운수관리팀 소속부서가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교통지도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부위원장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

운수관리팀 소속부서 변경에 따라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개정.

나. 법명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

3. 개정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별표1-사무분장표)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1) 입법예고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의거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마포구</u>(이하 “구”라 한다)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 및 교통 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마포구</u>(이하 “구”라 한다)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 및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기능) (생략)</p> <p>1.~2. (생략)</p> <p>3. <u>기타</u> 신고 전반에 관한 제반 사항</p>	<p>제2조 (기능)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신고 전반에 관한 제반 사항</p>
<p>제3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교통행정과장</u>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1.~4. (생략)</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교통지도과장</u>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제4조(임기) ① (생략)</p> <p>② 위촉위원이 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4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촉위원이 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